

# 부·방식 전문진단기관 인증 규정

제정 2004년 10월 29일

개정 2009년 02월 27일

개정 2016년 04월 22일

## 제 1 조 (정의 및 목적)

부·방식 전문진단기관 인증이란 산업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·방식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제도로서

- ① 점차 증가하는 산업계의 부·방식 관련 진단 수요 및 요구에 부응하고,
- ② 무분별한 진단업체의 난립을 예방하여 한국부식방식학회 (이하 본회)의 사회적,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.

## 제 2 조 (신청자격)

부·방식 전문진단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 기관 (이하 신청인)은 다음의 ① 인적 요건과 ② 물적 요건을 만족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소정의 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본회에 부·방식 전문진단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본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서 인증할 수 있다.

### ① 인적 요건

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, 필수전문기술인력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(별표 1).

### ② 물적 요건

진단에 필요한 핵심장비 및 진단실적 기준 등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가. 보유 장비 : 부식 진단이 가능한 장비 보유 (별지 서식 3호)

※ 필수 보유 장비 : 전위기록장치, 포텐쇼스탯트, 초음파두께 측정기 중 1개 이상

나. 진단실적: 과거 1년간 5회 이상 진단을 행한 업체 (별지서식 4호)

## 제 3 조 (신청서류)

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### ① 신청서 (별지서식 1호)

### ②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
가. 전문기술인력현황 (별지 서식 2호)

나. 학력 및 자격증명서 :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서 사본

다.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: 4대 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

라. 장비보유 리스트 (별지서식 3호)

- ③ 신청기관의 본회 단체 또는 특별회원 증명서 (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)
- ④ 진단실적증명서 (별지서식 4호)
-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

#### 제 4 조 (인증 절차)

① (심의위원회)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표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(심의절차) 심의위원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그 인증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
#### 제 5 조 (실적보고 및 사후관리)

인증기관은 인증발효 후 매 1년이 되는 시기에 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진단사업실적을 본회에 보고하며, 본회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제8조에서 언급하는 필요한 기술대금을 청구한다. 동시에 회장은 실적의 기술성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증의 유효성 유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 통보한다.

#### 제 6 조 (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)

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발효 후 2년간이며, 인증기관은 계속 승인을 원하는 경우 인증 유효 기간 만료 3월전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.

#### 제 7 조 (인증 심사료 및 인증 등록비)

신청인은 인증심사신청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, 인증서 교부시 인증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가. 인증 심사료 : 초회 2,000,000원, 갱신 1,000,000원

나. 인증 등록비 : 초회 2,000,000원, 갱신 1,000,000원

#### 제 8 조 (효력 및 기술대금)

① 신청인이 인증서를 교부받게 되면, 인증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등록기관으로 효력을 발생하며, 인증마크(본회로고)를 사용할 수 있다.

②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기관이 실시한 사업 중 진단용역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의 2%를 기술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#### 제 9 조 (징계)

등록기관이 본 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거나,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회에서는 인증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인증기관신청을 할 수 없다.

#### 제 10 조 (인증제도의 흐름)

본 인증제도의 운영은 다음의 별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1.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9일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9년 02월 27일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6년 04월 22일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.

**별표 1. 기술인력의 자격요건**

구 분	전문기술인력	필수전문기술인력
<p>자격요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사 자격취득 한 자</li> <li>• 기사 자격취득 후 4년 이상 부식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li>• 이공학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부식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li>• 이공학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부식 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li>• 이공학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부식 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li>• 이공학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부식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속(재료)기술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부식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부식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부식 방식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</li> </ul>

\*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각 항을 1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.

\* 필수전문기술인력의 해당분야는 부식, 방식, 표면처리, 전기화학 분야를 일컫는다.

## 별표 2. 인증절차 요약

단 계	내 용
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접수는 본회로의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</li> </ul>
서류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</li> </ul>
현장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인증신청서상의 기재사실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인적, 물적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신청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</li> <li>▷ 현지확인 실시 시기는 인증서발급 전 필요에 따라 실시함</li> </ul>
이사회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심의위원회는 전문진단기업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여 확정받음</li> </ul>
인증서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이사회승인 확정 후 이를 통보하며, 등록비 납부완료시 인증서 교부</li> </ul>
인증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인증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2 년으로 하며, 매 1 년마다 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▷ 갱신시에는 초기가입시의 방법과 절차가 동일하다.</li> </ul>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인증기간 중 매 1 년마다 제출된 실적서를 바탕으로 해당위원회에서는 수여업체의 기술성과 성실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인증을 해지할 수 있다.</li> </ul>
처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인증서 발급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임. (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전후하여 처리)</li> <li>▷ 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 (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)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인증서 신청 시 제반서류는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서류인 바,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 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.</li> </ul>

(별지서식 1 호 양식) 인증 신청서

부·방식관련 전문진단업체 인증 신청서				신규여부		처리기간	
				신규 ( ) 갱신 ( )		90일	
신 청 업 체	상 호			설립일자			
				사업자등록번호			
				법인등록번호			
	대표자성명 (주민등록번호)			전화번호 (FAX, E-mail)	Tel		
					FAX		
					E-mail		
	업체소재지						
연간매출액		백만원	총종업원수		명		
업체유형 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
신 고 사 항	보유장비갯수*				전년도진단실적		
	기술인력*	총계 ( )명	기술자격자	기술사 ( ) 기사 ( )			
			학 력 자	박사 ( ) 석사 ( ) 학사 ( ) 전문학사( )			
	주요활동		1) 2) 3)				
비고							
<p>전문진단업체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 청 인 (인)</p> <p>한국부식방식학회장 귀하</p>							

\* 상세 내용은 별지 혹은 별첨양식 사용

(별지서식 2호 양식) 전문기술인력 현황

전문기술인력 현황								
1. 개 항								
구분	박사	석사	학사	전문대졸	기타	계		
필수전문기술인력								
전문기술인력								
2. 전문기술인력 현황								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직위	소속부서	학위(학력) 보유현황 (기술자격 보유현황)			필수전문기술인력
					최종학위 (자격명)	전공학과 (자격종목)	수료(졸업)일자 (취득일자)	
계	명							
위 기재사실은 실제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신청인				(인)				
※전문기술인력 현황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
※ 첨부서류 : 학력 및 자격증명서





(별지서식 4 호 양식) 진단실적증명서

## 진 단 실 적 증 명 서

<b>진 단 실 적 사 항</b>				
(금액단위 : 천원)				
수행기간	진단 수행 실적			비 고
	사 업 명	발주처	계약금액	
<p>위 기재사실은 실제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  월   일</p> <p>신청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인)</span></p>				
<b>※진단실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</b>				

※ 첨부서류 : 성과물 및 준공보고서